

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,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,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등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

여,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
2.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광진구” 라 한다)의 동향 및 평가
3.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
4. 인공지능의 투명성·책임성·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
5.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
6.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
7.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인공지능 기술·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술·정책 자문단” (이하 “자문단” 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·정책 심의·사업 평가·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.

③ 자문단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·교수·연구원·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.

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,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인공지능 정책)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
2. 광진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
3. 구민의 인공지능 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
4.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·행사 등 개최
5.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
6.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·외 공공기관 및 기업·학계·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해당

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김진윤(02-450-7213)

붙임	관계법령
-----------	-------------

법규명	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제3조(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) ①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.</p> <p>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·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,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·경제·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
